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855 2023년 6월 22일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년 5월 30일, 이소라 의원 외 12명

나. 회부일자: 2023년 6월 5일

다. 상정일자: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

(2023년 6월 22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소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 기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저탄소 보고문화 정책의 정착을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인쇄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친환경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한 책무 규정(안 제24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박귀수)

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해 서울시 공공기관의 인쇄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장의 노력을 조례에 규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친환경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.

주요 내용은 첫째, 시 공공기관¹⁾의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하는 것과 둘째, 이의 이행을 위해 관행적인 종이의 구매·사용 과 인쇄 관련 비용 등을 줄이고 전자문서·기기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 것임.

<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>

조 항	내 용
안 제24조의2 (저탄소 사무실 조성)	① 서울시 공공기관의 저탄소 사무실 조성 노력 규정 ② 시장의 책무 규정 (종이와 인쇄 관련 비용 저감, 전자문서/기기 적극 활용)

○ 행정기관이 종이문서의 작성·접수·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, 종이문서를 지속해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「전자정부법」²⁾ 제33조에 따라 총리실('20.12.)과 법제처('21.6.)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'종이없는 회의' 도입을 발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음.

¹⁾ 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고 한다)의 본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나. 서울특별시의회

다.「지방공기업법」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, 공사·공단 및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1회 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^{2) 「}전자정부법」제33조(종이문서의 감축)

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·접수·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~④ (생략)

서울시는 '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 추진계획'을 수립('22. 12.)하여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며, 올해 1분기 실적 평가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종이구매량 35.2%, 복합기 부속부품(토너 등) 소모량을 7.5% 줄였다고 보고한 바 있고, 이 결과를 토대로 실·본부·국 자체회의는 물론 외부회의까지 종이 없는 회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.

스타벅스와 네이버 등의 다수기업에서도 ESG 경영, 비용 절감,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바,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, 취지나 내용에서도 이견 없음.

<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 세부 추진계획>

~'23.3.

시장단 주재 정기 간부회의 시범실시

- < 시장 주재 >
- * 정례 간부회의 (월 1회 대면회의, 50여명 참석)
- * 시정 현안회의 (매일 대면회의, 20~30명 참석)
- < 부시장 주재 >
- * 현안 토론회 (월 1회 대면회의, 20여명 참석)
- * 부구청장 회의 (월 1회 온라인회의, 10여명 현장, 부구청장 온라인 참석)
- * 주간회의 (주 1회 온라인회의, 전원 온라인참석)

~'23.12.

실.본부.국 내 자체회의 확대 시행

* 주간회의, 주요사업 공정회의, 사업별 검토회의 등

'24.1.

市 위원회 및 시의회 등 외부회의까지 확대 추진

- * 市 상설 위원회(238개), 비상설 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
- * 시의회, 국회와는 사전 협의 후 종이없는 회의 추진

 다만, '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'은 조례 등 관련 규정이나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향후 서울시는 불필요한 자료작성이나 회의를 지양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를 확대하며, 전자기기와 시스템 교육 확대를 통해 직원들이 종이없는 사무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 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또한 서울시는 현재 '서로온 화상회의', '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', 'S드라이브(클라우드 저장소)' 등을 갖추고 있으나, 민간프로그램보다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를 보완하고,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의 보급을확대할 필요가 있음.

마지막으로 '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' 추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없음
- 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저탄소 사무실 조성)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와 「지방공기업법」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, 공사·공단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출자·출연기관에 저탄소 사무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업무에서의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종이 구입, 인쇄 관련 비용 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고,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24조의2(저탄소 사무실 조성)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와 「지방공기업 법」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 직영기업, 공사・공단 및 「서울 특별시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・출연기 관에 저탄소 사무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업무에서의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종이 구입, 인쇄 관련 비용 등을 줄이도록 노 력하고,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 등 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
	<u>다.</u>